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46
----------	-----

제출연월일 : 2007. 6. 2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이용료를 경감함(안 제8조의2).
- 라. 시설 사용료중 원형극장, 야외광장 및 조명분야 사용료를 인하함(안 별표 1).
- 마. 문화예술강좌 항목중 예술영재 오디션 등 수강종류를 추가함(안 별표 4).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7. 5. 25. ~ 6. 14. / 접수의견 없음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정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전당의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당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대전시립예술단의 지휘자 또는 안무자
2.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연기획과장이 된다.

⑨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제1항중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관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8조의2 각 호외의 부분,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의4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5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5.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한다.

제8조의2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증 및 특수임무수행자유족증 소지자

제9조제2호가목 및 다목중 “계약금”을 각각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3조의4제3항중 “별표 1의 제5호”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1 제2호 나중 “1,000,000”을 “300,000”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다. 야외광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 조명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3. 부대설비 사용료 (아트홀 · 앙상블홀 공통)

(단위 : 원)

구 분	아트홀 · 앙상블홀				비 고
	품 명	사용료	품 명	사용료	
조 명	· MSR 2.5Kw	30,000	· Dry Ice Machine	20,000	· 1회 공연 기준 · 1대당 · 드라이 아이스 포그액은 단체 부담
	· MSR 2.0Kw	20,000	· Diffusion Fog Machine	무료	
	· MSR 1.0Kw	20,000	· Highend Fog Machine	무료	
	· Follow Pin Spot 3Kw	40,000	· Moving Light(MAC 2000) - 1일 기준	50,000	
	· Follow Pin Spot 2Kw	30,000	· Moving Console (Grand MA) - 1일 기준	50,000	
	· HMI 4Kw	40,000	· Fire Machine	5,000	
	· HMI 2.5Kw	30,000	· Ripple Machine	5,000	
	· Fresnel 5Kw	무료	· Par 64 Light(기본 50대 무료) - 추가 1대당	1,000	
	· Beam Light	무료	· Par 46 Light (8대 1조 기준)	5,000	
	· Black Light	10,000 (10대당)	· Par Bank (4구 2대 1조 기준)	5,000	

[별표 4]

문화예술강좌 수강료(제13조의4제3항 관련)

(단위 : 원)

종 류	수 강 료	비 고
예술영재 오디션	1회 10,000	신입영재 오디션에 한함
예술영재 마스터 클래스	1회 100,000	1회 50분 기준
예술영재교육	월 200,000	월 4회 기준 (1회 50분 기준)
문화예술교육	월 40,000	월 4회 기준 (1회 120분 기준)
특수분야 연수교육 (교육청 연수와 연계)	40,000	직무연수 1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기준
	70,000	직무연수 30시간 이상 ~ 45시간 미만
	100,000	직무연수 45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130,000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공연예술연수교육	무 료	

※ “공연예술연수교육”이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무대장치, 무대조명, 무대음향의 운영방법과 공연기획, 홍보방법 등 공연과 관련된 교육을 말함.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복권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강좌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별도 조정함.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운영자문위원회)</u>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u>제3조(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u>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정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li> <li>2. 전당의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전당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li> </ol> <p>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p> <p>③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전시립예술단의 지휘자 또는 안무자</li> <li>2.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p>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p> <p>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사용허가) ①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u>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u>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p> <p>②~④ (생략)</p> <p>제5조(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당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u>기타 관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lt;신설&gt; &lt;신설&gt; &lt;신설&gt;</p> <p>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 또는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⑧<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연기획과장이 된다.</u></p> <p>⑨<u>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⑩<u>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제4조(사용허가) ①----- ----- ----- <u>관장</u> ----- ----- ----- -----</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허가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특정종교의 선교·포교</u></p> <p>4. <u>정치적인 목적의 공연</u></p> <p>5. <u>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u></p> <p>6. <u>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u></p> <p>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현행	개정안
<p>2.~4. (생략)</p> <p>5.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6.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p> <p>1.~4. (생략)</p> <p>②~③ (생략)</p> <p>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생략)</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p> <p>1.~2. (생략)</p> <p>제8조의2(이용료의 경감)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4.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9조(사용료의 환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 환불</p>	<p>2.~4. (현행과 같음)</p> <p>5.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u>각 호와</u> ----- -----</p> <p>1.~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2.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이용료의 경감)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4. (생략)</p> <p>5. 「<u>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에 의한 <u>참전유공자증 소지자</u></p> <p>6. 「<u>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u>」에 의한 <u>특수임무수행자증 및 특수임무수행자유족증 소지자</u></p> <p>제9조(사용료의 환불)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 : <u>총사용료의 100분의 10</u>---</p>

현행	개정안
<p>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p> <p><b>제13조의4(문화예술강좌) ①~② (생략)</b></p> <p>③문화예술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u>별표 1의 제5호</u>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의 <u>각호의 1</u>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b>제15조(입장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b></p> <p>1.~3. (생략)</p>	<p>다. -----  ----- : <u>총사용료의 100분의 10</u> -----  -----</p> <p><b>제13조의4(문화예술강좌) ①~② (현행과 같음)</b></p> <p>③-----  ----- <u>별표 4</u>-----  -----</p> <p>④-----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3. (현행과 같음)</p> <p><b>제15조(입장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b>-----  -----</p> <p>1.~3. (현행과 같음)</p>

## 현 행

### [별표 1]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1. (생략)
2. 기타시설 사용료
  - 가. (생략)
  - 나. 원형극장(야외극장)

(단위 : 원)

면 적(평)	수용인원(명)	사 용 료	비 고
136	850	1,000,000	· 1회 4시간 기준 (공연에 한함) · 인력지원 없음 · 분장실 기본 2실 사용

주) ①~② (생략)

#### 다. 야외광장

(단위 : 원)

면 적(평)	수용인원(명)	사 용 료	비 고
2,000	2,000	1,000,000	· 1회 4시간 기준 (공연, CF촬영 등) · 인력지원 없음 · 분장실 기본 2실 사용 · 야외광장은 공연장 전면을 말한다

3. 부대설비 사용료(아트홀 · 앙상블홀공통)

(단위 : 원)

구 분	아트홀 · 앙상블홀				비 고
	품 명	사 용 료	품 명	사 용 료	
조 명	· MSR 2.5Kw	50,000	· Dry Ice Machine	20,000	· 1회 공연 기준 - 1대당 · 드라이 아이스 포그액은 단체 부담
	· MSR 2.0Kw	40,000	· Diffusion Fog Machine	무료	
	· MSR 1.0Kw	30,000	· Highend Fog Machine	무료	
	· Follow Pin Spot 3Kw	40,000	· Moving Light(MAC 2000) - 1일 기준	50,000	
	· Follow Pin Spot 2Kw	30,000	· Moving Console (Grand MA) - 1일 기준	100,000	
	· HMI 4Kw	50,000	· Fire Machine	20,000	
	· HMI 2.5Kw	30,000	· Ripple Machine	20,000	
	· Fresnel 5Kw	10,000	· Par 64 Light(기본 50대 무료) - 추가 1대당	2,000	
	· Beam Light	10,000	· Par 46 Light (8대 1조 기준)	5,000	
	· Black Light	10,000	· Par Bank (4구 1대 기준)	5,000	

4. (생략)

5.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단위 : 원)

종 류	수 강 료	비 고
예술영재교육	월 200,000	월 4회 기준 (※1회 50분 기준)
문화예술교육	월 40,000	월 4회 기준 (※1회 120분 기준)
특수분야 연수교육 (※ 교육청 연수와 연계)	40,000	직무연수 1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기준
	70,000	직무연수 30시간 이상 ~ 45시간 미만
	100,000	직무연수 45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130,000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공연예술연수교육	무 료	

※ “공연예술연수교육”이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무대장치, 무대조명, 무대음향의 운영방법과 공연기획, 홍보방법 등 공연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 개 정 안

### [별표 1]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기타시설 사용료
  - 가. (현행과 같음)
  - 나. 원형극장(야외극장)

(단위 : 원)

면 적(평)	수용인원(명)	사 용 료	비 고
136	850	300,000	· 1회 4시간 기준 (공연에 한함) · 인력지원 없음 · 분장실 기본 2실 사용

주) ①~② (현행과 같음)

#### <삭제>

3. 부대설비 사용료(아트홀 · 앙상블홀공통)

(단위 : 원)

구 분	아트홀 · 앙상블홀				비 고
	품 명	사 용 료	품 명	사 용 료	
조 명	· MSR 2.5Kw	30,000	· Dry Ice Machine	20,000	· 1회 공연 기준 - 1대당 · 드라이 아이스 포그액은 단체 부담
	· MSR 2.0Kw	20,000	· Diffusion Fog Machine	무료	
	· MSR 1.0Kw	20,000	· Highend Fog Machine	무료	
	· Follow Pin Spot 3Kw	40,000	· Moving Light(MAC 2000) - 1일 기준	50,000	
	· Follow Pin Spot 2Kw	30,000	· Moving Console (Grand MA) - 1일 기준	50,000	
	· HMI 4Kw	40,000	· Fire Machine	5,000	
	· HMI 2.5Kw	30,000	· Ripple Machine	5,000	
	· Fresnel 5Kw	무료	· Par 64 Light(기본 50대 무료) - 추가 1대당	1,000	
	· Beam Light	무료	· Par 46 Light (8대 1조 기준)	5,000	
	· Black Light	10,000 (10대당)	· Par Bank (4구 2대 1조 기준)	5,000	

4. (현행과 같음)

#### <삭제>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별표 4]

문화예술강좌 수강료(제13조의4제3항 관련)

(단위 : 원)

종 류	수 강 료	비 고
예술영재 오디션	1회 10,000	신입영재 오디션에 한함
예술영재 마스터 클래스	1회 100,000	1회 50분 기준
예술영재교육	월 200,000	월 4회 기준 (1회 50분 기준)
문화예술교육	월 40,000	월 4회 기준 (1회 120분 기준)
특수분야 연수교육 (교육청 연수와 연계)	40,000	직무연수 1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기준
	70,000	직무연수 30시간 이상 ~ 45시간 미만
	100,000	직무연수 45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130,000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공연예술연수교육	무 료	

※ “공연예술연수교육”이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무대장치, 무대조명, 무대음향의 운영방법과 공연기획, 홍보방법 등 공연과 관련된 교육을 말함.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복권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강좌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별도 조정함.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  
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